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0.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0. 7. 29~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마친 국가결산보고서를 지난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심의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통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회는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473.1조원, 총지출은 485.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서, 지난 재정운용 상황을 검토·분석하여 그 방향성과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8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생활 SOC사업 등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I. 결산 개요 / 1

- 1. 현 황 1
-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1

II. 주요 현안 분석 / 13

- 1.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사업 결산 분석 13
 - 1-1. 완성보증계정의 리스크 관리 필요 등 14
 - 1-2.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20
- 2.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사업 결산 분석 23
 - 2-1.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및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의 이월집행 부적정 23
 - 2-2.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27
-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보조사업 결산 분석 30

III. 개별 사업 분석 / 38

- 1. 연구용역과제의 이월집행 최소화 필요 38
- 2.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부적정한 예산전용 문제 43
- 3. 목적예비비 집행행태 개선 필요 48
- 4. 보조사업의 사업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에 따른 이월 부적정 등 53



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반연구비 이월 과다	59
6.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보다 큰 불용액 발생 부적정	62
7. 한국관광 이미지광고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 후 이월집행 부적정	65
8.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68
9.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사업의 미흡한 사업추진 부적정	72
10. 자산취득비의 연말 집행 및 이월 집행 지양 필요	79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83

[문화재청]

I. 결산 개요 / 87

1. 현 황	87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3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94

II. 개별 사업 분석 / 95

1.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의 실집행 저조 및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95
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장비구입비 예산 관리·감독 철저 필요	98
3.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보조금 배분방법 개선 필요	101
4.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의 실집행을 제고 필요 등	105
5. 문화재보호기금의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징수노력 강화 필요	109
6.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112



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594억 9,100만원이며, 1,817억 1,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5.2%인 1,548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268억 3,4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6,687	56,687	56,687	72,069	51,668	20,401	0	71.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328	22,328	22,328	17,767	11,349	6,417	0	63.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80,476	80,476	80,476	91,876	91,860	16	0	100.0
합계	159,491	159,491	159,491	181,711	154,877	26,834	0	85.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5,797억 6,500만원이며, 이 중 95.2%인 3조 4,064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878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54억 6,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443,013	2,444,513	2,538,885	2,411,335	58,839	68,711	95.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26,326	926,326	957,722	915,635	27,282	14,805	95.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80,476	80,476	83,157	79,487	1,721	1,949	95.6
합계	3,449,815	3,451,315	3,579,765	3,406,457	87,842	85,465	95.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4조 3,554억 1,500만원이며, 4조 9,584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4조 9,524억 4,100만원을 수납하고 59억 9,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468,533	468,533	468,533	432,528	432,055	473	0	99.9
영화발전기금	264,950	264,950	264,950	264,505	263,672	833	0	99.7
지역신문발전기금	8,649	8,649	8,649	10,277	10,187	90	0	99.1
언론진흥기금	26,978	26,978	26,978	29,143	29,105	38	0	99.9
관광진흥개발기금	1,237,011	1,237,011	1,237,011	1,248,756	1,246,600	2,156	0	99.8
국민체육진흥기금	2,349,294	2,349,294	2,349,294	2,973,226	2,970,821	2,405	0	99.9
합계	4,355,415	4,355,415	4,355,415	4,958,436	4,952,441	5,995	0	99.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4조 3,554억 1,500만원이며, 현액 4조 3,650억 6,400만원의 113.5%인 4조 9,524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94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16억 2,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468,533	468,533	469,947	432,055	1,531	3,123	91.9
영화발전기금	264,950	264,950	267,310	263,672	2,445	3,339	98.6
지역신문발전기금	8,649	8,649	8,649	10,187	0	336	117.8
언론진흥기금	26,978	26,978	27,242	29,105	0	1,050	106.8
관광진흥개발기금	1,237,011	1,237,011	1,239,521	1,246,600	4,748	106,498	100.6
국민체육진흥기금	2,349,294	2,349,294	2,352,395	2,970,821	751	17,275	126.3
합계	4,355,415	4,355,415	4,365,064	4,952,441	9,475	131,621	113.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82억 3,200만원(21.9%)이 증가한 3조 5,55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120억 7,400만원(29.6%)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31,002	79,705	79,705	66,910	△12,795	△64,092
기금	2,612,399	2,837,538	2,837,538	3,488,565	651,027	876,166
합계	2,743,401	2,917,243	2,917,243	3,555,475	638,232	812,07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815억 3,600만원 (3.0%)이 감소한 5조 8,526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097억 6,700만원(13.8%)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761,557	3,290,243	3,291,743	3,239,901	△51,842	478,344
기금	2,381,373	2,633,097	2,742,490	2,612,796	△129,694	231,423
합계	5,142,930	5,923,340	6,034,233	5,852,697	△181,536	709,76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산은 13조 8,088억 1,972만원, 부채는 9,242억 787만원으로 순자산은 12조 8,846억 1,185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조 5,971억 26만원, 투자자산 4조 9,715억 2,674만원, 일반 유형자산 6조 1,572억 1,642만원, 무형자산 731억 886만원, 기타비유동자산 98억 6,741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4,323억 3,490만원(11.6%) 증가하였다. 이는 단기투자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1,925억 1,815만원 증가,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등 증가에 따른 투자자산 6,670억 5,624만원 증가, 토지,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증가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5,694억 25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65억 4,793만원, 장기차입부채 8,326억 7,546만원, 장기충당 부채 111억 7,755만원 기타비유동부채 538억 692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6억 2,097만원(0.4%) 증가하였다. 이는 미지급금 및 예수금, 예수보증금, 미지급비용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18억 5,455만원 증가,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증가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13억 8,307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3,808,820	12,376,485	1,432,335	11.6
Ⅰ. 유동자산	2,597,100	2,404,582	192,518	8.0
Ⅱ. 투자자산	4,971,527	4,304,470	667,057	15.5
Ⅲ. 일반유형자산	6,157,216	5,587,814	569,402	10.2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73,109	69,734	3,375	4.8
Ⅵ. 기타비유동자산	9,867	9,884	△17	△0.2
부 채	924,208	920,587	3,621	0.4
Ⅰ. 유동부채	26,548	24,693	1,855	7.5
Ⅱ. 장기차입부채	832,675	832,330	345	0.0
Ⅲ. 장기충당부채	11,178	9,794	1,384	14.1
Ⅳ. 기타비유동부채	53,807	53,769	38	0.1
순 자 산	12,884,612	11,455,897	1,428,714	12.4
Ⅰ. 기본순자산	6,095,090	5,449,067	646,023	11.8
Ⅱ. 적립금 및 잉여금	4,597,611	4,186,496	411,115	9.8
Ⅲ. 순자산 조정	2,191,910	1,820,333	371,577	20.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2,464억 9,058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4조 8,020억 1,684만원, 관리운영비 3,550억 9,192만원, 비배분비용 458억 5,447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843억, 비배분수익 1,671억 8,979만원, 비교환수익 등 2조 6,044억 8,785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5,694억 7,313만원(13.3%) 증가한 4조 8,509억 7,844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 순원가 5,767억 2,088만원 증가 및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기타수익 감소 등에 따라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80억 2,509만원 등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3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국내관광 활성화 프로그램(805억 1,797만원)과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277억 7,429만원), 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246억 5,70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356억 515만원과 경비 1,194억 8,676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재화및용역제공원가 246억 8,580만원 이자비용 162억 6,177만원과 지급수수료 20억 7,739만원, 대손상각비 21억 7,756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4,617,221	4,040,501	576,720	14.3
가. 프로그램 총원가	4,802,016	4,210,350	591,666	14.0
나. 프로그램 수익	184,795	169,849	14,946	8.7
II. 관리운영비	355,092	341,518	13,574	4.0
III. 비배분비용	45,854	74,701	△28,847	△38.6
IV. 비배분수익	167,190	175,215	△8,025	△4.6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850,978	4,281,505	570,930	13.3
VI. 비교환수익 등	2,604,488	2,432,456	172,032	7.1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246,491	1,849,050	398,897	2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11조 4,558억 9,791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2조 8,846억 1,184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4,287억 1,393만원(12.47%)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3,974억 4,104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4,934억 2,897만원 증가,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5,197억 4,072만원 등이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보다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 무상이전수입 등 채원의 조달 3조 3,036억 2,772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등 채원의 이전 1,377억 3,535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287억 8,251만원, 자산재평가이익 3,427억 9,427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1,455,898	10,642,913	812,985	7.6
II. 재정운영결과	2,246,491	1,849,050	397,441	21.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303,628	2,783,887	519,741	18.7
IV. 조정항목	371,577	△121,852	493,429	404.9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2,884,612	11,455,898	1,428,714	1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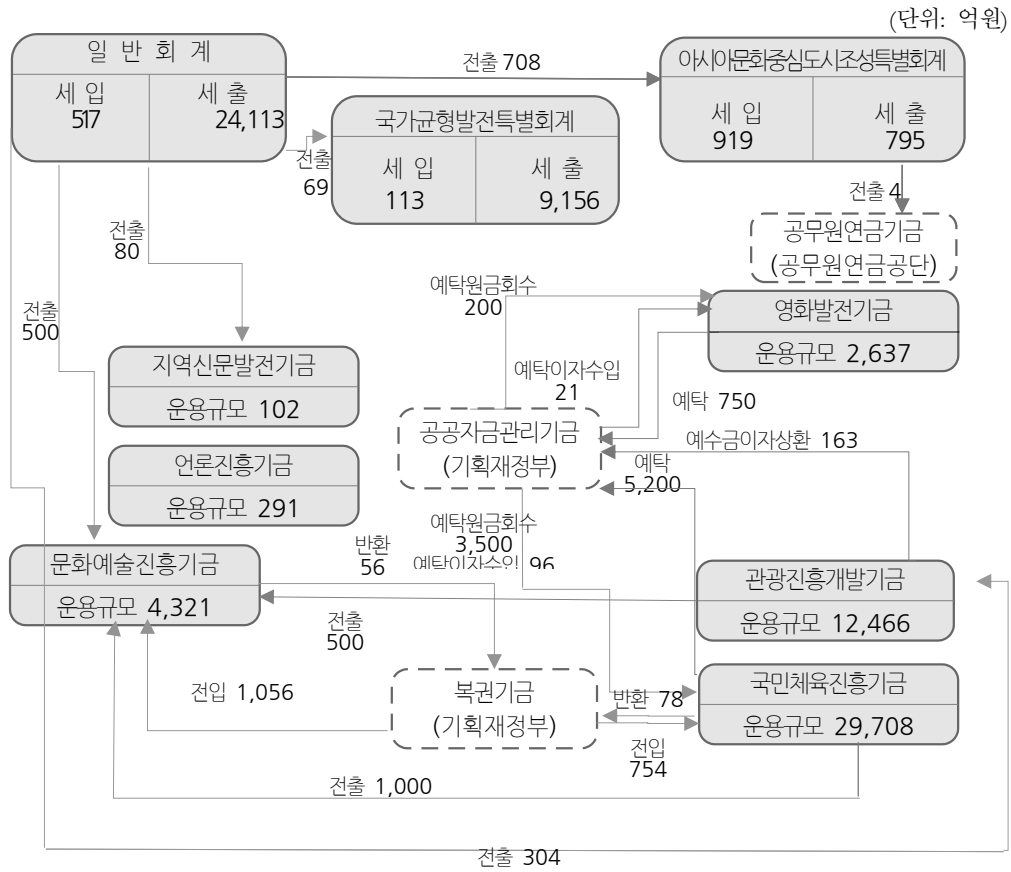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 708억원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500억원 전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304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역신문발전 기금으로 80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056억원을 전입받고 56억원을 반환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50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1,000억원을 전입받았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기금 으로부터 754억원을 전입받고 78억원을 반환하였으며, 공자기금에 5,200억원을 예탁하고 예탁 원금 3,500억원을 회수, 예탁이자 수입으로 96억원을 받았다. 영화 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에 750억원을 예탁하고 예탁원금 200억원 회수, 예탁이자 수입 21억원을 받았다.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자기금에 예수금 이자로 163억 원을 상환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②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③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등이 있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은 지난 2년간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국회 삭감 의견을 고려하여 120억원이 감액(750억→630억)되었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타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감액(105→85억)되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실집행률 저조로 200억원 감액(2,247.7억원→2,047.7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② 예술창작활동 지원, ③ 한국형 생태 녹색관광 육성 등이 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학교예술강사 인건비·처우개선비와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49억원이 증액(1,120억→1,169억)되었고,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예산 15억원이 증액(74억→89억)되었다. 한국형 생태 녹색관광 육성 사업은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30억원이 증액(110억→140억)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 전시 개편 사업, ②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 전시 개편 사업은 “학계·이해당사자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균형 있는 시각으로 추진할 것”,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를 별도의 인건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 ②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등이 있다.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은 국회 본예산(안) 심사 시 감액 취지를 고려하여 가상현실 체험관을 시범·조성하여 운영한 후 사업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사업은 정부의 출자금 확대가 연도 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펀드 조기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⁴⁾

3)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4)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9.6.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 환경 조성, ②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③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④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경쟁력 강화를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및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기간 연장과 예산의 이월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2019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양적·질적 성과지표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민간보조사업 수가 많다는 이유로 실적보고서 제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정기한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과 정보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정기한 내 취득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고, 5년간 평균 집행률이 약 67%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과제의 이월을 최소화하여 회계연도와 과제 수행기간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연구용역과제를 무리하게 연말에 추진하여 이월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광사업체 용자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국회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의결(추경)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변경을 통해 용자지원액을 증액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액분보다 더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분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체육인복지사업의 내역사업인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은 사업연도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여 지급금액을 높이고,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실 집행률이 63.9%에 그치는 등 사업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향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해 투·융자 정책금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완성보증계정 출연’ 사업과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콘텐츠기업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시 보증지원을 해주거나 금융기관의 융자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여 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또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²⁾을 통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에 완성보증계정 출연 사업에 200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여 1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에 630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완성보증계정 출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3,750	23,750	0	0	23,750	22,972	0	778
완성보증계정 출연	20,000	20,000	0	0	20,000	20,000	0	0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2,000	2,000	0	0	2,000	1,222	0	778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63,000	63,000	0	0	63,000	63,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231-306

2) 코드: 일반회계 1231-322

1-1. 완성보증계정의 리스크 관리 필요 등

가. 현 황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³⁾의 내역사업인 완성보증계정 출연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완성보증계정에 자금을 출연하여 콘텐츠 관련 기업이 대출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콘텐츠 완성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예산현액 200억원을 전액 출연하여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완성보증계정 출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3,750	23,750	0	0	23,750	22,972	0	778
완성보증계정 출연	20,000	20,000	0	0	20,000	20,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완성보증계정 설치 이후 2019년까지 정부가 출연한 금액은 총 590억원이다. 2019년에는 기존의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도 완성보증계정 운용기관으로 추가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기 위해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을 2018년의 2배인 2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 150억원, 신용보증기금에 50억원을 출연하였다.

3) 코드: 일반회계 1231-306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③ (생략)

[연도별 정부 출연액 현황]

(단위: 억원)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신보	
22.3	23	54.7	-	20	20	50	50	50	100	150	50	590

주: '기보'는 기술보증기금, '신보'는 신용보증기금의 약자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완성보증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출연금 증가가 기본재산 적립과 신규보증규모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완성보증출연사업은 문화콘텐츠⁵⁾ 제작자금에 대한 프로젝트성 보증으로 제작 완료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므로, 문화콘텐츠의 제작 완성이 안되거나 흥행이 저조하여 보증을 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성보증계정 운용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하게 되어 있다.

2019년 기술보증기금의 완성보증계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순증이 전년도(11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34.6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도 전년도(16.5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31.2억원을 기록하였다.

5) 완성보증을 지원하는 문화콘텐츠는 만화, 애니,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 등 총 9개의 장르로 나뉜다.

[완성보증계정 운영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신보
정부출연	50	50	50	100	150	50
사고순증(A)	18.9	32.3	112.6	11.0	34.6	0
대위변제	16.9	27.4	116.7	16.5	31.2	0
보증잔액(B)	251	446	412	318	507	129
기본재산(C)	122	130	49.4	149	245	36
운용배수(B/C)	2.05	3.42	8.34	2.13	2.07	3.53
사고율(A/B)	7.5	7.2	27.3	3.5	6.8	0

주: '기보'는 기술보증기금, '신보'는 신용보증기금의 약자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은 2017년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급격한 사고율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로 신규보증규모 축소,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을 하여 사고율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며, 2019년의 경우 보증규모가 큰 업체의 사고발생 및 보증규모 확대에 따른 리스크 상승 등으로 인해 2018년 대비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에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기 위해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을 전년도 2배인 200억원 규모로 확대하였는바, 이 중 15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의 완성보증계정에 출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도한 신규보증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출연금 증액이 기본재산의 증가로 연결되어야 하고, 운용배수도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 출연금이 대위변제로 사용되면서 기본재산이 정부 출연금보다 적게 증가한 측면이 있고, 운용배수도 2018년의 2.13배보다 적은 2.07배로 나타났는바, 완성보증계정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완성보증계정 출연예산의 중기계획(2020~2024)⁶⁾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까지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신규보증규모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인데, 완성보증의 사고율이 기술

6) <완성보증계정 출연예산 중기계획(2020~2024)>

보증기금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 있어 증액된 출연금이 대위변제로 많이 사용된다면 기본재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술보증기금 완성보증계정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출연한 금액은 총 540억원이나, 2019년 말 기준으로 기본재산은 245억에 불과한데, 이는 정부 출연금의 일부가 대위변제에 사용되어 기본재산 적립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⁷⁾

[완성보증 사고율 현황]

(단위: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기보기금전체	4.2	4.5	4.4	4.5	4.5
완성보증	7.5	7.2	27.3	3.5	6.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은 대표적인 하이리스크-하이리턴(high risk-high return) 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주요지원 업종인 제조업에 비해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으나, 사고율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기본재산의 확충 및 운용배수 확대에 한계가 있어 정부 출연금의 증가가 당초 기대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완성보증계정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완성보증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출연금 증가가 기본재산 적립과 신규보증규모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완성보증계정 출연	200	300	350	400	450	1,7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7)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재산 감소액 295억원 중 대위변제액이 270.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완성보증 활용이 저조한 장르에 대해 새로운 보증수요를 발굴하고, 선판매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완성보증 지원이 방송/드라마와 공연 위주에서 다양한 장르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 중인 콘텐츠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판매 계약’ 요건으로 인해 방송/드라마 및 공연 장르위주로 완성보증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드라마, 공연 등은 완성보증 지원 조건인 선판매 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신규보증기준 장르별 보증공급액 규모를 살펴보면, 방송/드라마와 공연에 대한 보증공급액이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전체의 79.2%이고,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전체의 65.9%를 차지하여 완성보증 지원이 두 장르에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신규보증기준 장르별 보증공급액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게임	애니	방송/드라마	영화	디지털 콘텐츠	공연	캐릭터	음악	만화	합 계
기술보증기금	금액	0.9	70.5	384.3	12.5	34.7	179.2	21.1	3.8	4.8	711.8
	비중	0.1	9.9	54.0	1.7	4.9	25.2	3.0	0.5	0.7	100
신용보증기금	금액	7	13	74	31	-	25	-	-	-	150
	비중	4.7	8.7	49.3	20.7	-	16.6	-	-	-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드라마와 공연 장르는 산업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고, 선판매 계약에 따른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회수 시스템, 프로젝트 규모 등이 완성보증 자금 조달에 적합한 측면이 있어 완성보증 공급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⁸⁾

그러나 완성보증제도의 도입취지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8) 또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은 시장에서 보증자금이 선호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음악, 웹툰 등의 장르는 프로젝트 제작비(보증) 규모가 크지 않아 일반 기업보증 활용하거나, 회사 내부 자금 등으로 제작비를 조달하여, 완성보증을 통한 자금 수요가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특정 장르에 완성보증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다양한 장르의 균형있는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완성보증 활용이 저조한 장르에 대해 새로운 보증수요를 발굴하고, 선판매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완성보증 지원이 방송/드라마와 공연 위주에서 다양한 장르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2.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집행을 제고 필요

가. 현 황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콘텐츠기업이 민간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의 융자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여 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예산현액 20억원 중 1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3,750	23,750	0	0	23,750	22,972	0	778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2,000	2,000	0	0	2,000	1,222	0	77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원기간은 1년, 기업별 융자한도는 5억원(단, 창업 및 청년 기업의 경우 10억원)이고, 이차보전율은 2.5%p로 되어 있다. 2019년의 경우 총 59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이차보전액으로 1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0개(신규)의 콘텐츠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2019년도 이차보전지원 실적]

융자지원 규모	이차보전액	이차보전율	지원기업 수	평균지원금액
590억원	12억 2,200만원	2.5%p	(기존)168개 (신규)240개	3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 코드: 일반회계 1231-306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차보전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동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은 2018년 시작한 사업으로, 2018~2019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20억원의 예산 중 3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7.1%에 불과하였고, 2019년에는 20억원의 예산 중 12억 2,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1.1%에 그쳐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금융기관 협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준비기간 소요로 인해 실제 5월부터 대출이 실행되어 집행이 부진하였고, 2019년의 경우 2년차 사업으로 콘텐츠기업들의 사업 인지도가 높지 않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²⁾

[2018~2019년도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8	2,000	2,000	0	2,000	342	17.1	0	1,658
2019	2,000	2,000	0	2,000	1,222	61.1	0	77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2018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2년차인 2019년에도 집행률이 61.1%에 그친 것은 동 사업에 대한 홍보·안내나 월별 집행실적 점검 등 적극적인 집행관리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에 신규로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대출약정기간은 532일이고, 평균 대출액 규모는 2억 2,460만원, 평균지원금액은 3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바, 기업의 대출약정기간에 비해 지원기간(1년)이 짧고, 평균 대출액 규모도 크지 않아 평균지원금액도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유인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예산 사업의 특성상 차년도 예산편성 여부가 연말까지 확정적이지 않아 차년도에 이차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 대출기업이 타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할 유인이 있는 것도 집행저조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콘텐츠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결과,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은 ‘까다로운 대출심사 및 높은 요구조건(48.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높은 대출금리(18.0%)’, ‘과도한 담보나 보증 요구(14.3%)’가 뒤를 이었다.

[콘텐츠기업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단위: %)

과도한 담보나 보증 요구	예적금, 보험, 카드 등 신규 가입 요구	높은 대출 금리	까다로운 대출 심사 및 높은 요구 조건	예상치 못한 요구 조건	인보증 (당사자 또는 제2자 자연인의 보증) 요구	매출액을 포함한 재무제표 중심 기준	콘텐츠에 대한 이해 부족	기 타
14.3	2.1	18.0	48.1	0.5	0.5	4.2	4.2	7.9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2019.

즉, 무형 자산 위주인 콘텐츠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대출심사나 과도한 보증 요구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는바, 이러한 대출환경으로 인해 이차보전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차보전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동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1.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및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의 이월집행 부적정

가. 현 황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¹⁾의 (내)내역 사업인 ‘가상현실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사업과 ‘공공향유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국립박물관 등에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체험관 조성 시 필요한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이다. ‘가상현실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사업은 2019년 예산현액 40억원 중 10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다. ‘공공향유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2019년 예산현액 100억원 중 1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	26,125	26,125	0	0	26,125	23,151	2,608	366
가상현실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4,000	4,000	0	0	4,000	1,056	2,608	336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18,870	18,870	0	0	18,870	18,870	0	0
공공향유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10,000	10,000	0	0	10,000	10,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 등 4곳의 국립박물관에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을 추진하였다. 동 조성사업은 실감콘텐츠체험관 조성사업과 체험관에 설치하는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으로 나뉠 수 있는데, ① 실감콘텐츠체험관 조성사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232-303

업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수행하였고, ②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은 콘텐츠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전액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집행되었다.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및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 연장과 예산의 이월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2019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실감콘텐츠체험관 조성사업과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사업의 2019년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실감콘텐츠체험관 조성사업은 예산 40억원 중 26억 800만원이 이월되었고,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은 보조사업비 100억원 중 61억 5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19년도 실감콘텐츠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비목	예산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감콘텐츠체험관 조성 (중앙·청주·광주·대구박물관)	210-14 (일반용역비)	4,000 ¹⁾	1,056	2,608	336
실감콘텐츠 제작(20종)	320-01 (민간경상보조)	10,000	3,895	6,105	0

주: 1) 예산 40억원 중 1천만원은 일반수용비 비목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실감콘텐츠체험관 조성과 실감콘텐츠 제작을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여 12월말 체험관을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은 2019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특성상 콘텐츠 기획 및 선정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콘텐츠 제작의 경우 보다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9년도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 추진경과]

구 분	추진 경과
실감콘텐츠 체험관	◦ '19.1~4월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실시 ◦ '19.6~7월 체험관 조성 용역계약 조달청 발주 ◦ '19.9월 체험관 조성(4개관 중앙, 청주, 광주, 대구) 용역계약 체결 ◦ '19.12월 체험관 조성 사업기간 연장(~'20.3)에 따른 사업비 이월 - 사유: 콘텐츠 제작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복합 공정 추진 기간 확보 ◦ '20.3월 체험관 조성 사업기간 연장(~'20.4) - 사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일정 변경 필요 ◦ '20.5월 체험관 개관 - 중앙·청주: 5월 20일 개관, 광주: 5월 21일 개관, 대구: 7월 21일 개관 예정
실감콘텐츠 제작	◦ '19.1~4월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실시 ◦ '19.6~7월 콘텐츠 제작(20종) 용역계약 조달청 발주 ◦ '19.9월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 체결 ◦ '19.12월 콘텐츠 제작 사업기간 연장(~'20.4)에 따른 사업비 이월 ◦ '20.4월 콘텐츠 제작 완료 및 위탁용역 검수평가 실시 ◦ '20.5월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재검수평가 실시 및 사업완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12월까지 체험관 조성을 완료한다는 연초 계획에 비춰볼 때 9월에서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예산을 이월집행한 것은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체험관 조성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수행기관으로 외부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고, 콘텐츠 제작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보조금을 교부한 후 진흥원이 외부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이원적인 체계로 진행하였다. 체험관 조성과 체험관에 설치하는 콘텐츠 제작은 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러한 이원적인 추진체계로 인하여 각 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 및 각 위탁용역업체 간 책임의 혼선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

국회는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물관은 유물 관리 등이 본연의 업무이므로 일부 박물관에서 시범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20억원 감액한바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박물관 및 미술관 16개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4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에도 총 10개소의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므로,³⁾ 2019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콘텐츠 제작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사업기간 연장과 이월집행으로 국회 결산심사 시 사업의 효과, 이용 실적 등 성과평가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 연장과 예산의 이월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2019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및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에는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일반용역비로 변경함으로써 콘텐츠제작과 체험과 조성 수행기관을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2020년도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현황>

구 분	20년도 예산	내 역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100억원	국립박물관 6개소(경주, 부여, 공주, 김해, 제주, 춘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총 10개소
실감콘텐츠 제작	100억원	박물관·도서관·미술관 소장 대표 문화유산에 대한 실감 콘텐츠 제작(20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2.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 시장이 5G 시대 도래와 함께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 분야로 보고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9년도에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9년 예산 261억 2,500만원 중 231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9년도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의 내역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	집행액	집행 내역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18,870	18,870	- 시장주도형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 - 공공향유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가상현실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2,450	2,450	- 뉴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 육성 - 뉴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 등
가상현실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4,000	1,056	-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콘텐츠 사업화 지원	805	775	- 해외마켓 공동관 참가 지원,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 지원 - 가상현실 콘텐츠 홍보 등
합 계	26,125	23,15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가상현실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수’로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목표 56개 중에 실적은 53개로 94.6%를 달성하였다.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의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가상현실콘텐츠 제작업체 지원수 (단위: 개)	목표	15	18	56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건수 합산
	실적	19	20	53		
	달성도	126.7	111.1	94.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사업설명자료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양적·질적 성과지표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고, 최근 3년 간의 집행실적을 점검·평가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가상현실 콘텐츠 인프라 조성, 가상현실 콘텐츠 사업화 지원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가상현실콘텐츠 제작업체 지원수’라는 단일한 성과지표에 의해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동 사업을 평가하면서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라고는 하나 다수의 사업에 있어서 성과로 제시된 내용이 단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⁴⁾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표적으로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017~2019년 3년 간 총 56개의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이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종료 후 결과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종료 이후 실감콘텐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는 지원기업 매출액 조사 등 후속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결과평가]

연도	과제수	지원기간	평가일시	평가방법	평가결과	비고
2017	16	'17.7.1~ '18.3.31	'18.4.19 ~4.20	외부전문가 7인에 의한 콘텐츠 시연평가	13개 합격 3개 미흡	미흡 3개 과제는 재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 판정
2018	20	'18.6.1~ '19.1.31	'19.2.19 ~2.22	외부전문가 7인에 의한 콘텐츠 시연평가	17개 합격, 3개 미흡	미흡 3개 과제는 재평가를 통해 1개 합격, 2개 과제 실패 판정
2019	20	'19.5.3~ 11.30	'19.12.6 ~12.7	외부전문가 7인에 의한 콘텐츠 시연평가	18개 합격 2개 미흡	미흡 2개 과제는 재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 판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 기획재정부,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p.546.

그러나 사업시작 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단순히 가상현실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수라든지 제작지원한 콘텐츠의 결과평가를 넘어 개별 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내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양적·질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이 2019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고(’19년 261억원 → ’20년 870억원)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객관적·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양적·질적 성과지표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고, 최근 3년 간의 집행실적을 점검·평가하여 향후 효과적인 사업모델 구축 및 사업규모 확대 여부 등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민간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320-01목)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320-07목)로 구분된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보조사업의 결산 현황(보조사업자의 실집행 기준)을 살펴보면, 예산(계획액) 총 2조 1,093억원¹⁾ 중 2조 996억 600만원을 교부하였고,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계획)현액 2조 1,570억 5,700만원 중 1조 8,783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099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7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보조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¹⁾ (계획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 산	898,289	891,703	9,861	901,564	816,798	54,833	29,933
기 금	1,211,011	1,207,903	47,590	1,255,493	1,061,560	155,148	38,786
합 계	2,109,300	2,099,606	57,451	2,157,057	1,878,358	209,981	68,719

주: 1)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권순진 예산분석관(si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추경 기준)은 5조 9,772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민간보조사업의 비중은 35.3%에 해당한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³⁾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⁴⁾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2항⁵⁾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정산보고서 등의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⁶⁾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

리지침」 제46조제1항7)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상 실적보고서 제출·정보공시·중요재산 취득보고 의무]

구 분	제출(공시) 방법	기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의무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보조사업 정보공시의무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공시	다음연도 4월 말까지
중요재산 취득보고 의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	취득 후 15일 이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기한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보조사업자 수가 매우 많다는 이유로 법정기한(다음연도 2월 말까지) 내 민간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⁸⁾ 현재 보조사업자들은 보조사업 정보공시의무 이행 등을 위해 다음연도 4월 말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시스템)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4월 말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보고서 제출 여부를 통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현황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보조사업의 1차 보조사업자 수는 4,965개로 4월 말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보조사업자 수는 969개(19.5%)로 나타났다.⁹⁾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산보고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민간보조사업의 구조가 다수의 하위 보조사업자로 구성(18,347개)되어 있어서 1차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9년도 민간보조사업 차수별 보조사업자 수 및 정산보고서 미제출 현황]

(단위: 개)

구 분	보조사업자수	정산보고서 미제출
1차 보조사업자	4,965	969
2차 보조사업자	8,527	778
3차 보조사업자	4,680	340
4차 보조사업자	175	61
합 계	18,347	2,14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e나라도움 시스템 추출)

8)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간접 보조사업자(1차~4차)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민간보조사업자 수가 18,000여개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9)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미제출 사업에는 이월에 의해 정산시기가 미도래한 사업과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보조사업자 수가 더 적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서 정부의 보조금 잔액 및 이자정산, 차년도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 등에 활용되고 국회도 이를 제출받아 보조사업 결산 검토 시 활용하므로, 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은 단순한 회계 절차 이행의 의미를 넘어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및 국회 재정통제의 효과성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적보고서 제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정기한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제3항¹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10~50% 삭감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해태하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정보공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정산보고서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¹¹⁾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공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정보공시 현황을 보면,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내역사업) 17,615개 중 4월말까지 정보공시가 확정된 보조사업 수는 15,743개로 1,872개(10.6%)의 보조사업은 정보공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보조사업의 정보공시 현황]

(단위: 개)

기간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정산완료		미정산 (이월사업 포함)
		공시확정 (누적)	공시진행중 (통보, 접수, 등록 등)	
2월말기준	17,615	1,665	1,426	290
4월말기준		15,743		

주: 1,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e나라도움 시스템 추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2항¹²⁾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공시기한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해태하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정보공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중요재산의 취득보고 및 공시가 기한을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취득보고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상시 공시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정보망을 통해 중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6개월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관광 활성화,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저작권 보호활동활성화 등 일부 사업은 중요재산 취득 후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10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중요재산 취득보고를 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보조사업 중 중요재산 취득보고 지연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재산유형	취득가액	취득일자	취득보고일자
스마트관광 활성화	한국관광공사	기타 (무형자산)	19.8	2019.5.17.	2019.8.27.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한국문화정보원	기타 (솔리드, 냉방기 등)	16	2019.6.13.	2020.2.18.
저작권 보호활동활성화	한국저작권보호원	기타	37	2019.5.20.	2019.12.27.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한국콘텐츠 진흥원	장비	191	2018.3.30.	2019.8.27.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한국영상자료원	기타	48	2018.5.2.	2019.1.28.
		기타	3	2018.3.12.	2019.1.28.
		기타(서버)	26	2018.3.7.	2019.1.28.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국립오페라단	기타	3	2017.10.19.	2019.8.28.
			74	2017.12.18.	2019.8.27.
			2	2017.12.14.	2019.8.27.
			33	2017.10.13.	2019.8.27.
			33	2017.10.13.	2019.8.27.
			6	2017.10.13.	2019.8.27.

주: 중요재산 취득보고 지연사례 중 일부만 적시한 내용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취득보고 및 공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중요재산 가액의 변동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요재산 취득보고 및 공시업무와 관련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보고가 기한을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연구용역과제의 이월집행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정책연구개발 사업¹⁾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예산현액 24억 2,100만원 중 16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연구개발	1,940	1,940	481	0	2,421	1,681	734	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각 실국의 정책연구비를 포괄연구비로 통합·관리 중으로, 동 사업은 전액 정책연구비(260-02) 비목²⁾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정책연구 기본사업계획 수립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연구과제선정 등) → 연구자 선정, 계약 → 정책연구 착수 → 진행사항 점검 → 연구결과 평가 → 연구 활용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7132-600

2) 정책연구비(260-02)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비목을 말한다.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용역과제의 이월을 최소화하여 회계연도와 과제 수행기간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연구용역과제를 무리하게 연말에 추진하여 이월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고, 5년 간 평균 집행률이 약 67%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5~2019년도 정책연구개발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5	2,886	2,886	0	2,886	1,506	52.2	858	522
2016	2,597	2,597	858	3,455	1,957	56.6	778	721
2017	2,000	2,000	778	2,778	2,126	76.5	483	169
2018	1,940	1,940	483	2,423	1,903	78.5	481	39
2019	1,940	1,940	481	2,421	1,681	69.5	734	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매년 많은 연구용역과제들 중 하반기 계약체결 과제가 다수 발생하여 예산집행의 이월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9년도에는 총 43개 연구용역과제 중 39.5%인 17건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연구용역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연구용역과제 중 이월된 연구용역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번	연구용역명	계약 금액	입찰 공고일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1	문화복지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91	'19.8.26.	'19.10.2. ~'20.3.30.	
2	남북 전통문화 조사·연구 및 교류 증진 방안	49	수의계약	'19.7.19.	'19.7.19. ~'20.2.17.
3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공 연법령 개정연구	17	수의계약	'19.12.30.	'19.12.30. ~'20.4.20.
4	문화예술진흥법 재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54	'19.7.17.	'19.9.23.	'19.9.23. ~'20.4.21.
5	서예실태조사	50	'19.7.23.	'19.9.16.	'19.9.16. ~'20.4.15.
6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마련 방안 연구	38	수의계약	'19.10.30.	'19.10.30. ~'20.2.26.
7	공공건축물의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18	수의계약	'19.11.13.	'19.11.13. ~'20.2.28.
8	(가칭)문화예술인재개발원 건립 운영 기본계획 연구용역	87	'19.5.21.	'19.7.4.	'19.7.4. ~'20.1.30.
9	콘텐츠 플랫폼 환경변화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중심으로)	53	1차: '19.8.19~9.3 재공고: '19.9.3~9.18	'19.10.14.	'19.10.14. ~'20.3.12.
10	사적복제 이용 실태조사 및 정책적 대 응방안 연구	53	1차: '19.8.27~9.10 2차: '19.9.10~9.24 수익: '19.10.11~10.16	'19.10.30.	'19.10.30. ~'20.3.28.
11	정부 광고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6	1차: '19.5.30.~6.4. 재공고: '19.7.29.~8.1.	'19.8.28.	'19.8.28. ~'20.1.27.
12	방송 제작현장 안전 가이드 라인 개발	44	1차: '19.4.15.~4.17. 2차: '19.5.7.~5.9. 3차: '19.5.24.~5.28. 4차: '19.6.10.~6.13.	'19.8.5.	'19.8.5. ~'20.2.4.
13	간행물윤리위원회 개선방안 연구	20	수의계약	'19.10.15.	'19.10.15. ~'20.3.27.
14	스포츠기본법 제정 및 체육관계 법령 정비 방안 연구	50	'19.12.17.	'20.2.28.	'20.2.28. ~'20.8.27.
15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 연구	30	'19.12.17.	'20.02.05.	'20.2.05. ~'20.08.04.
16	지속가능한 문화비전2030 추진방안 연구	45	'19.5.23.	'19.7.12.	'19.7.12. ~'20.1.11.
17	문화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측정모형 개발 연구	82	'19.11.25.	'20.1.16.	'20.1.16. ~'20.9.12.

주: 음영 부분은 연말에 입찰공고한 연구용역과제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연초 계획한 연구과제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내실있는 연구를 위한 검토기간 소요 및 유찰 등으로 인한 계약 지연 등으로 하반기 계약 체결과제가 다수 발생하여 예산집행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시의성있는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연도 중 일부 연구과제의 변경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전체 연구용역과제 중 39.5%인 17건을 이월 집행하여 예산의 약 38%(본예산 대비) 수준을 이월집행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례적으로 상당수의 연구용역과제를 이월하여 집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볼 때 과제수행을 회계연도 내에 마치려는 노력없이 관성적으로 연구용역과제를 이월집행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2015~2019년 정책연구과제 수 및 이월과제 수 현황]

(단위: 개, %)

연 도	총 정책연구과제 수	이월과제 수(비중)
2015년	67개	19개(28.3)
2016년	51개	19개(37.2)
2017년	44개	14개(31.8)
2018년	40개	10개(25.0)
2019년	43개	17개(3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2019년 이월된 연구용역과제 중 “스포츠기본법 제정 및 체육관계 법령 정비 방안 연구” 등 3건은 연말에 입찰공고하여 2020년 1월과 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9년 예산에 편성된 정책연구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며, 연말에 추진한 연구용역과제는 사실상 2020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였어도 무방하였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³⁾ 이처럼 연구용역과제를 연말에 입찰공고하여 이월집행하는 것은 집행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⁴⁾

3)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1.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는 그 활용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연구용역과제의 이월집행은 이러한 환류시스템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용역과제의 이월을 최소화하여 회계연도와 과제 수행기간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연구용역과제를 무리하게 연말에 추진하여 이월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2019년도 동 사업의 불용액이 최근 5년 간 최소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요불급하거나 2020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용역과제들을 무리하게 연말에 추진하여 불용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현 황

기관운영 기본경비¹⁾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예산현액 28억 300만원 중 27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2,611	2,611	0	192	2,803	2,761	0	4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속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²⁾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권순진 예산분석관(si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7112-250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년도 고용현황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보면 총 상시근로자수(연간 누계)는 35,654명,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연간 누계)은 1,027명이며 미고용인원(연간 누계)은 177명으로 2019년에 총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억 6,726만원이다.³⁾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연간 누계	장애인의무고 용 인원 연간 누계 ¹⁾	실제고용인원 연간 누계	미고용인원 연간 누계 ²⁾	장애인 고용부담금
본부	543	12	17	-	-
한국예술종합학교	3,492	100	36	64	53,046
국립중앙박물관	10,980	319	295	25	21,741
국립국악원	2,868	85	72	13	11,055
해외문화홍보원	497	12	-	12	9,898
국립중앙극장	2,785	82	72	10	8,030
국립중앙도서관	4,594	132	123	9	7,234
국립국악중고	268	12	8	8	6,981

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제21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고용인원 등을 산정하는데, 본부 및 개별 기관의 단순합계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차원의 수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앞에서 서술한 내용 안의 수치와 표 안의 수치 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연간 누계	장애인의무고 용 인원 연간 누계 ¹⁾	실제고용인원 연간 누계	미고용인원 연간 누계 ²⁾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립현대미술관	2,387	68	61	7	5,953
한국정책방송원	727	24	22	2	1,80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492	44	24	20	16,2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60	18	-	18	15,500
국립한글박물관	785	24	12	12	9,898
국립전통예술중고	416	12	12	-	-
국립국어원	935	24	24	-	-
국립민속박물관	2,113	60	72	-	-
예술원	12	-	-	-	-
합계	35,654	1,028	850	200	167,350

주: 1) 월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합계로 상시근로자수 연간 누계×의무고용비율(2.9%) 값과 상이함

2) 고용인원 충족 여부는 월별로 계산하며,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연간 누계-실제고용인원 연간 누계 값과 상이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에 소속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기본경비에서 총 1억 2,565만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전용하였고,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에서 전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였다.

[2019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전용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증 액			감 액		
	사업명	세목	금액	사업명	세목	금액
자체 전용	기관운영 기본경비	210-02	125,652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210-02	△53,046
				국립박물관 기본경비	210-02	△21,741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210-02	△7,234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210-02	△9,898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210-15	△11,055
				국악중고 기본경비	210-02	△6,891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210-02	△8,030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210-07	△5,953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210-02	△1,804

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별도 기본경비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본부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납부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소속기관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전용하여 일괄 납부한 데 대하여, 징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업무처리 규정과 시스템의 문제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별로 부담금 납부가 불가하고 본부에서 일괄 납부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기관별 부담금을 세부사업에서 소액으로 전용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8년까지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크지 않아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에 고용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하여 고용미달인원이 증가하였고,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인당 기초부담액도 증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⁴⁾ 이에 불가피하게 소속기관 기본경비 예산에서 본부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예산전용의 불가피성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소액 다건으로 많은 세부사업에서 전용을 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가회계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4)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의 상시근로자 수는 2017년 20,529명에서 2018년 35,654명으로 증가하였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7년 630만원에서 2018년 1억 6,735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1인당 기초부담액은 2017년 812,000원에서 2018년 945,000원으로 증가하였다.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본부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본부 기본경비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8년까지는 2.9%였으나 2019년 이후에는 3.4%로 증가하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전용문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줄일 수 있도록 각 소속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속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에 일반회계의 재해복구(관광) 사업¹⁾ 등 2개 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사업²⁾ 등 3개 사업에 목적예비비³⁾ 총 248억 1,300만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예비비로 추진한 5개 사업은 모두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예비비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명	예비비 배정일	예비비	배정사유
일반회계	재해복구(관광)	'19.5.31.	17,297	-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관광시설 복구 지원(동해, 속초)
	재해복구(체육)	'19.6.10.	620	-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공공체육시설 복구 지원(속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19.1.23.	1,000	- 고용위기지역(군산)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19.9.10.	750	- 고용위기지역(울산)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	'19.1.23.	3,300	- 산업위기지역(통영, 목포, 영암, 군산)의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진흥시설 지원(지역자율)	'19.9.10.	1,846	- 산업위기지역(통영, 거제, 창원)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합 계			24,81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4132-330

2)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51-300

3)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일반예비비와 예산총칙에 미리 사용목적(지정)하여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목적예비비로 구성된다. 2019년도 예산총칙에 따른 목적예비비는 1.8조원이다.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목적예비비의 대부분을 이월집행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연초에 목적예비비로 배정하는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목적예비비로 수행한 5개 사업의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243억 6,300만원의 교부액 중 15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28억 1,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이 6.4%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2019년 목적예비비 사업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교부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행률(B/A)
재해복구(관광)	17,297	557	16,740	0	3.2
재해복구(체육)	620	9	611	0	1.5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1,750	293	1,457	0	16.7
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	2,850	691	2,159	0	24.2
체육진흥시설 지원(지역자율)	1,846	0	1,846	0	0.0
합 계	24,363	1,550	22,813	0	6.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회계의 재해복구(관광), 재해복구(체육) 사업의 경우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 관광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의 복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⁴⁾ 복구작업에 상당한 시

4)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 12. 18. 국회의결

<예산총칙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8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시행시기 조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적예비비의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사업 등 3개 사업에 배정된 목적예비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먼저, 국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7개 사업에 목적예비비 48억 3,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으나 대부분 이월 처리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로 편성된 예비비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2019년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3개 사업에 목적예비비 68억 9,6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대부분 이월 처리하는 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체육진흥시설 지원(지역자율) 사업은 교부받은 예비비를 전액 집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사전 행정절차 소요, 지자체 추경예산 반영 시간 소요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목적예비비의 대부분을 이월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비비 집행행태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체육진흥시설(지역자율) 사업의 세부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통영	통영 죽림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330	0	1,330
거제	거제시 체육관 방수공사	36	0	36
	거제 아주운동장 내부 보수공사	30	0	30
창원	창원 롤러경기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300	0	300
	창원 실내수영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150	0	1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음으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사업과 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 사업의 경우 연초인 2019년 1월 18일에 목적예비비를 신청하여 1월 23일 배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 예측하기 곤란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여 불가피하게 계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비비

를 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 신청하여 배정한 것은 이러한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사업을 통한 목적예비비는 고용·산업 위기 지역(군산, 목포, 영암, 통영)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으로 배정한 것인데, 해당 지역들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지역의 지정은 2018년 4~5월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가급적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또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사업 내 ‘군산동부권도서관 건립사업’과 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 사업 내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예비비로 지원한 금액이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금액의 일부라는 점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목적예비비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목적예비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2019년 연초에 신청한 목적예비비의 구체적인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비비 신청일 (배정일)	예비비	내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19.1.18. (19.1.23.)	1,000	군산동부권도서관 건립사업 (전북 군산)	2017~21년	10,155백만원 (국비 3,783 /지방비 6,373)
관광자원개발 (지역자율)	'19.1.18. (19.1.23.)	100	옥암 수변공원 조성 (전남 목포)	2019~20년	200백만원 (국비 100/지방비 100)
		250	월출산100리 둘레길 생태경과 조성 (전남 영암)	2019~21년	1,800백만원 (국비 900/지방비 900)
		450	월명산 전망대 및 관 광객 쉼터 조성 (전북 군산)	2017~21년	3,000백만원 (국비 1,050 /지방비 1,950)
		2,500	남망산공원 디지털 파크 조성사업 (경남 통영)	2018~20년	5,000백만원 (국비 2,500 /지방비 2,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5) 군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18년 4월 5일, 통영·영암·목포에 대한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18년 5월 29일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목적예비비의 대부분을 이월집행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연초에 목적예비비로 배정함으로써 목적예비비의 취지에 어긋나게 예비비를 운용하는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예술창작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인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은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 지원을 통해 민간분야 창작·제작 역량을 향상하고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계획현액 54억 9,000만원 중 51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예술창작지원	45,033	45,041	805	45,846	43,238	1,349	1,259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5,490	5,490	0	5,490	5,155	80	25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2019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51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총 50억 5,100만원(민간경상보조)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1-300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 지원(최대 3개년)을 통해 민간분야 창작·제작 역량 향상과 안정적 기반 마련
지원신청 자격	○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법인 - 연극(창작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 총 4개 분야
지원대상 (사업)	○ 다년간 체계적인 개발과정이 필요한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
지원내용	○ 지원규모: 단체별 연간 1억 5천만원 내외(최대 2억원) - 단체별 연간 사업의 규모, 유형, 성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 매년 성과에 대한 사업평가 환류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지원기간: 2019년~2021년(최대 3년간) ○ 지원항목: 직접경비(지원금의 70% 이상), 운영경비(지원금의 30% 이하) - 자부담: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19년도 예산 및 지원현황	○ '19년도 예산: 54억 9,000만원(민간경상보조 52억 5,000만원, 운영비 2억 4,000만원) ○ '19년도 지원현황: 51개 단체 50억 5,100만원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을 가급적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사업의 사업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과도한 이월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피보조기관인 51개 단체에 50억 5,100만원을 교부하여 6억 8,500만원을 실집행하고 43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는바, 실집행률이 13.0%로 저조하였다.

[2019년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피보조기관(51개 단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5,250	5,250	5,051	5,051	685	4,366	0	13.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동 사업의 1차년도(2019년)의 사업기간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²⁾까지로 되어있어 교부한 보조금의 대부분이 이월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보조사업자들의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동 사업이 2019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고, 공모사업의 공고와 심사절차 및 지원단체 선정 등 1년차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로 인해 사업기간이 2020년 상반기까지로 설정되었고, 실제 보조금 지급도 11월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바,³⁾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기간을 2회계연도에 걸쳐 설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상당액을 이월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사업은 한번 선정된 단체에게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1차년도

2) 당초 2020년 4월까지였으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기간이 2020년 6월까지로 연장되었다.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사업기간이 2020년 6월에 끝남에 따라 2차년도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까지로 되어있어 2020년도에도 이월집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연차
별 계획이 있는 사업에서 사업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넘겨서 설정할 경우 연쇄
적으로 차년도 사업도 영향을 받아 이월집행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차년도 결산 시점에서
사업의 성과확인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동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이
2020년 6월까지로 되어 있음에 따라 정부의 결산보고서 국회제출 시점인 5월 31일
이후에야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회의 결산심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동 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을
가급적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사업의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가 불일치하여 과도한 이월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내역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거칠 수 있
도록 하는 등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
르면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중기계획 상 5년간 100억원 이상 사업 포함)
신규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⁴⁾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절차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
는 사업을 차년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① 먼저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
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적격성 심사의 심사대상,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
으며, 수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최종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⑤ 각 부처는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관서 자체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적격성 심사결과를 검증 및 재검토를 하게 되며, ③ 최종 심사결과는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리고 각 부처는 적격성이 인정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도 신규사업인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은 중기계획('19년~'23년)⁵⁾상 274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세부사업 단위로 추진되며, 내역사업인 동 사업은 별도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안내하는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기준(지참)에 따르면, 심사대상 사업단위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나, 신규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세부사업 내의 타 내역사업과 사업목적,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이라고 하고 있어 신규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사업의 경우, 같은 세부사업(예술창작지원 사업) 내에 유사한 사업으로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이라는 내역사업이 있는데, 동 사업과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은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은 다수의 내내역사업(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제지원, 공연장대관료지원, 공연예술공간지원)으로 이루어져있고 기본적으로 단년도 지원사업이므로, 다년간(3년) 지원을 통해 안정된 창작기반을 마련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과 지원내용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보조금 적격성 심사를 거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실무상으로 신규 세부사업이 아닌 내역사업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의 중기예산운용계획('19년~'23년)>

(단위: 백만원)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5,450	5,450	5,450	5,450	5,450	27,45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둔 취지가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무분별한 보조사업의 예산요구를 차단하고, 각 부처에서 보조사업 신설을 추진할 경우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내역사업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예산 및 기금사업의 상당수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하나의 세부사업이 다수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보조사업이 내역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이 100억원 이상(중기계획 상 5년간 100억원 이상 사업 포함)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내역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관광진흥개발기금의 2019년 일반연구비는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¹⁾ 등 5개 사업에 총 16억 5,000만원(수정 계획액)이 편성되어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년도 이월액 6억 1,1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 22억 6,100만원 중 9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반연구비(210-01)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비목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관광레저기반 구축	210-01	850	850	250	1,100	398	676	26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210-01	200	200	0	200	0	178	22
한스타일 육성지원	210-01	50	50	45	95	95	0	0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210-01	500	500	252	752	371	359	22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210-01	100	50	64	114	64	0	50
합 계	210-01	1,700	1,650	611	2,261	928	1,213	1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반연구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하여 2019년에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연구 등 총 18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10건의 연구용역과제를 다음년도까지 수행함에 따라 2019년도 계획현액 22억 6,100만원 중 53.6%인 12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161-311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일반연구비가 편성되어 있는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과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019년 일반연구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은 총 7개의 연구용역과제 중 5개의 과제를 이월하였고,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총 8개의 연구용역과제 중 4개의 과제를 이월하여 일반연구비를 과다하게 이월집행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관광레저기반 구축,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반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사업명	과제수		계획액			
	총 연구용역 과제수	이월과제 수		계획현액	이월액	
			비중			비중
관광레저기반 구축	7	5	71.4	1,100	676	61.5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8	4	50.0	752	359	4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일반연구비의 과다한 이월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연도 말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다음연도까지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2019년에 이월한 연구용역과제 10건 중 5건은 6월부터 계약의뢰 하였으나, 2회 유찰되는 등 계약이 지연되어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월집행을 하게 되었다.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구용역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구용역명	계약기간	금액
관광레저기반 구축	서해안권 및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최종평가 연구 ¹⁾	'19.4.22. ~11.28.	89
	50-299인 관광사업체 근로실태조사	'19.11.11. ~'20.8.10.	56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19.4.22. ~'20.1.16.	225
	광역관광개발 개선방안 연구	'19.7.12. ~'20.8.31.	285

사업명	연구용역명	계약기간	금액
	산림휴양관광개발 제도 및 실행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19.12.9. ~'20.4.30.	22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MICE 산업 경제규모 추정 및 성장지표 개발	'19.8.19. ~'20.8.19.	78
	안전성 검사기관 및 검사인력 자격요건 등 개선방안 연구	'19.11.1. ~'20.4.30.	46
	온라인여행사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19.12.11. ~'20.3.31.	51
	문화관광축제 지정 심사 평가지표 개발 연구	'20.2.14. ~'20.8.13.	84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19.6.14 ~'20.2.29.	178

주: 1. 음영 부분은 11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임

1) 동 연구는 계약기간이 '19년 11월 28일까지이나 내용보완 등으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월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연구용역비(260목)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규정²⁾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연구비를 과다하게 이월하는 것은 이러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반연구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79.

가. 현 황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인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은 관광시설의 확충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체의 시설(신·증축 및 개보수) 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계획현액 5,370억원 중 4,325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044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관광산업 융자지원	495,000	540,000	0	540,000	435,523	0	104,477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492,000	537,000	0	537,000	432,523	0	104,477
보증기관 출연	3,000	3,000	0	3,000	3,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분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의 2019년 당초 계획액은 4,920억원이었으나, 2019년 8월 2일 국회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의결(추경)로 300억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 9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통한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150억원을 추가 증액한 바 있다.²⁾ 그러나 2019년 실제 융자 집행액은 4,325억 2,3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7-300

2)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으로서 주요항

에도 미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1,044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9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계획 변경 내역]

일 자	계획현액	변경액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19.8.2. (국회의결)	4,920억원	+300억원	5,220억원	-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지역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특별융자 300억원 실시예 따른 관광융자 재원 부족 우려
19.9.5. (협의변경)	5,220억원	+150억원	5,370억원	- 방일 및 방한 여행수요 감소 등 관광 여건 변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반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추경 때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00억원)은 4월에 발생한 강원 산불로 인해 반영한 것으로, 추경의 국회 제출 당시(4월 25일)는 연도 초반으로서 이후의 융자집행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9월 실시한 기금협의 변경의 경우 최근 관광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따른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로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8년에도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3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그 증액분을 넘어서는 329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고, 국회의 결산심사 시 지적을 받은바 있다.³⁾ 2019년의 경우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4월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때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연도내 집행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을 일부 이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추경으로 300억원을 증액한지 한달만에 추가로 기금운용계획을 협의변경하여 150억원을 증액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연도말 큰

목 지출금액의 20%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20% 이내에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변경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자체변경할 수 있다.

3) 2018년도 결산 지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회계연도 내 추가집행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만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업을 불필요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증액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⁴⁾에도 부합하지 않는 기금운영행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할 때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분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06.

가. 현 황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¹⁾의 내역사업인 한국관광 이미지광고 사업은 관광 환경·관광객 특성 분석을 통해 한국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이미지 광고를 송출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계획현액 28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국관광 이미지광고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한국관광 해외광고	28,479	36,479	0	36,479	36,479	0	0
한국관광 이미지광고	20,000	28,000	0	28,000	28,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목) 비목으로 편성되어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게 보조사업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9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관광공사는 교부받은 280억원 중 181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98억 2,200만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은 64.9%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관광 이미지광고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피보조기관(한국관광공사)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000	28,000	28,000	28,000	18,178	9,822	0	6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361-302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이월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관행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 이미지광고 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200억원이었으나, 2019년 9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통한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80억원을 증액변경하였다.

[2019년 한국관광 이미지광고 사업의 계획 변경 내역]

일 자	계획현액	변경액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19.9.5.	200억원	+80억원	280억원	- 일본 수출규제조치('19.7.1.) 이후, 방한관광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위한 중화권, 동남아 등 대상 한국관광 해외광고 집중송출 필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동 사업은 2019년 교부액 280억원 중 98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는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광고법 시행('18.12.31)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해외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대행사와의 최종협상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이미지광고 신규제작('19.9월) 완료 이후 해외 매체 집중 송출을 위해 사업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면서 이월집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²⁾에 따르면 연도 말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증액한 후 사업기간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이월집행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은 2018년에도 2019년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증액한 후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이월집행하였는바, 보조금 집행 시 원칙적으로 이월을

2)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06.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³⁾의 취지에 비춰볼 때 관행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보조금을 이월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이월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관행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현 황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계획현액 26억 5,000만원 중 26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4,668	24,668	109	24,777	24,585	0	192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650	2,650	0	2,650	2,642	0	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계획현액 26억 5,000만원 중 시스템 개발·운영 및 연구용역비 9억 3,600만원을 제외한 17억 1,400만원이 자치단체 보조사업비(국고보조율 70%)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 12세~23세 장애인이고,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6개월 지원하며,²⁾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공공·민간체육시설을 활용하게 된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0

2) 2020년에는 지원인원 확대를 위해 지원연령(12세~23세→12세~49세) 및 지원기간(6개월→8개월)을 확장하였다.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가맹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보조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액 17억 1,400만원 중 17억 600만원을 자치단체로 교부하여 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7,7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이 19.2%에 그쳤다.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피보조기관(지방자치단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당초	수정						
1,714	1,714	1,706	1,706	328	0	1,377	19.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계획인원을 5,1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2,310명이 이용하여 계획 대비 이용률은 45.3%를 기록하였다.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별 보조사업비, 이용인원 현황]

(단위: 백만원, %, 명)

구 분	보조사업비			인 원		
	교부액(A)	집행액(B)	실집행률(B/A)	계획(C)	이용(D)	계획 대비 이용률(D/C)
합 계	1,706	328	19.2	5,100	2,310	45.3
강 원	33	7	21.2	104	55	52.8
경 기	291	56	19.2	865	339	39.2
경 남	107	52	48.6	317	399	125.9
경 북	182	5	2.7	541	57	10.5
광 주	169	25	14.8	502	168	33.5

(단위: 백만원, %, 명)

구 분	보조사업비			인 원		
	교부액(A)	집행액(B)	실집행률 (B/A)	계획(C)	이용(D)	계획 대비 이용률(D/C)
대 구	107	19	17.8	319	163	51.1
대 전	130	5	3.8	387	70	18.1
부 산	98	26	26.5	292	194	66.4
서 울	100	30	30.0	317	165	52.1
세 종	4	4	100.0	11	40	363.6
울 산	13	13	100.0	41	60	146.3
인 천	101	12	11.9	300	147	49.0
전 남	108	22	20.4	321	124	38.6
전 북	38	14	36.8	112	115	102.7
제 주	107	10	9.3	319	65	20.4
충 남	66	15	22.7	196	96	49.0
충 북	52	13	25.0	156	53	3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2019년은 시범사업 시행 원년으로 낮은 사업인지도 및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신청 불편 등의 이유로 신청인원 및 가맹시설 등록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신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비의 실집행률이 19.2%에 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사업비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애초에 1년차 사업의 이용인원 예측을 잘못하였다는 점을 의미하고, 시스템이 하반기(19.10.10.)에 전면 운영 되는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단체별 보조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자치단체 간 실집행률과 계획대비 이용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³⁾ 자치단체별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부액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3) 세종과 울산의 경우 계획인원보다 실제 이용인원이 훨씬 많아 교부액을 전액집행하였으나, 경북과 대전의 경우 계획인원보다 실제 이용인원이 훨씬 적어 실집행률이 각각 2.7%, 3.8%에 그쳤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운용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가맹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단체별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보조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가능 전국 가맹시설 현황]

(단위: 개)

구 분	'19.7월 현재(사업 시작 시점)	'19.12월 현재
강 원	12	15
경 기	95	119
경 남	51	58
경 북	54	63
광 주	64	71
대 구	80	100
대 전	25	29
부 산	46	62
서 울	50	57
세 종	6	6
울 산	10	13
인 천	14	17
전 남	37	43
전 북	57	66
제 주	19	19
충 남	23	27
충 북	21	26
합 계	664	79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가. 현 황

체육인복지사업¹⁾의 내역사업인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계획현액 75억원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체육인복지사업	18,766	18,766	0	18,766	18,108	0	658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7,500	7,500	0	7,500	7,5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2018년 8월 23일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는바,²⁾ 그 주요내용은 복권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장학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은 이러한 배경하에 2019년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선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1인당 매월 30만원 이내 장학금을 바우처로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2019년도 예산은 장학금 69억원과 사업운영비 6억원을 합한 7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263-300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8.8.23.),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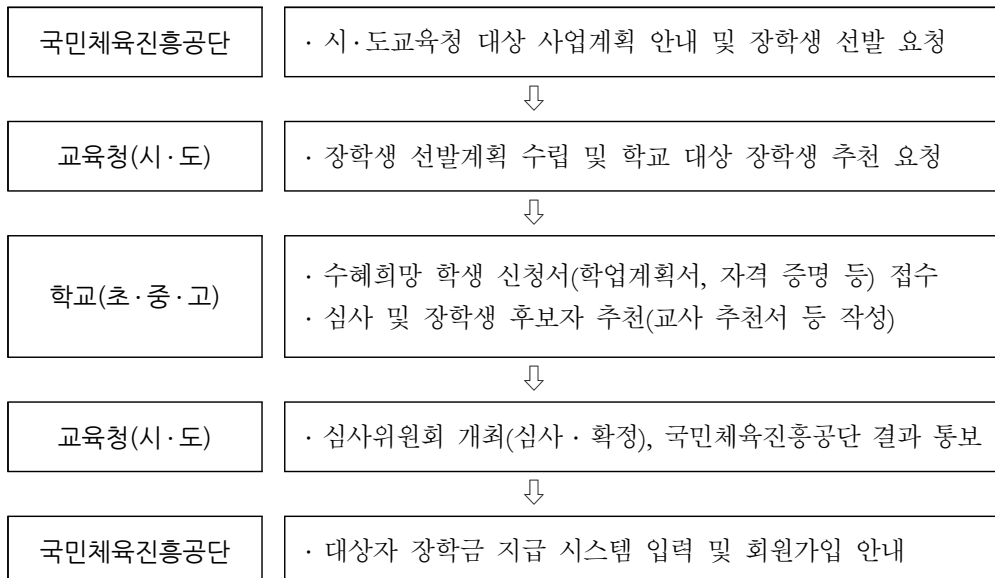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개요(당초 계획)]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선수가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기초 생활수급 등) 초·중·고 학생 선수
지원내용	○1인당 매월 30만원 이내 장학금 지원(스포츠, 학습부문 사용 한정)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개인별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액 정산)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총 10개월)
'19년도 예산	○75억원(장학금 69억원, 사업운영비 6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동 사업의 장학생 선발절차를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도교육청 대상 사업계획 안내 및 장학생 선발 요청을 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장학생 추천 요청을 하며, 각급 학교에서 심사를 거쳐 장학생 후보자를 추천한 후 시·도교육청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의 장학생 선발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과 같이 일반 국민에게 영향이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의 민간보조사업비 실행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액 75억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교부하여 47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2,400만원을 불용하여 실행률이 63.9%에 그쳤다. 이처럼 실행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했던 장학생 선발인원보다 실제 장학금을 신청하여 선발된 인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2019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피보조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행률 (B/A)
당초	수정						
7,500	7,500	7,500	7,500	4,776	0	2,724	6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 학생선수 2,300명(전국 저소득층 학생선수 5,392명 대비 42.7%)을 선발하여 월 30만원씩 10개월(3월~12월)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원 희망자 모집·선정 결과 계획 대비 신청자(986명 신청, 968명 선정)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선발 목표인원을 1,500명으로 낮추는 대신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2019년 1월~12월)하고, 지급금액을 월 10만원 증액(30만원→40만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³⁾ 이후 장학생을 추가선발하였으나, 최종 선발인원은 당초 계획한 2,300명의 48.6%인 1,118명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27억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에 복권기금에서 집행한 장학지원사업(교육부/한국장학재단)의 지원규모(지급금액 40만원, 지급기간 12개월)에 비해 동 사업의 지원규모가 적어 신청이 저조하였다고 판단하고, 지원규모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계획 및 실적 현황]

구 분	사업 계획		실적('19.12월말)
	당초('19.4월)	변경('19.7월)	
선발인원	2,300명	1,500명	1,118명 ¹⁾
지원기간	3월~12월(10개월)	1월~12월(12개월)	1월~12월(12개월) ²⁾
지급금액	월 30만원	월 40만원	월 40만원
예산	· 장학금: 69억원 · 운영비: 6억원	· 장학금: 72억원 · 운영비: 3억원	· 장학금: 47억 7,200만원 · 운영비: 400만원

주: 1) 선발 후 카드 미발급, 지원금 미사용 등으로 실제 수혜인원은 1,026명임

2) 1~7월분은 8월 사업 시행 시 소급하여 지급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동 사업이 2019년 신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비의 실제행률이 63.9%에 불과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애초에 장학생 선발인원의 예측을 잘못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은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국가장학금 성격을 띠는 사업이라는 점과 직접적인 수혜계층이 발생하는 등 일반 국민에게 영향이 큰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지원기간과 지급금액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학생 선발인원이 목표인원에 미치지 못하자 사업연도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여 지급금액을 높이고, 지원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는 사업계획을 애초에 면밀하게 마련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안내책자 제작, 매체 광고 등 홍보비성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홍보비 내역으로는 21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⁴⁾ 동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기본적으로 학생선수의 신청과 담당 교사의 추천을 통해 선발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첫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각급

4) <홍보비성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편성 내역	집행 내역
◦ 안내책자 제작 등 - 1000만원*3회 = 3,000만원 ◦ 기획 기사 등 매체 광고 - 1000만원*3회 = 3,000만원	◦ 홍보물품 구입 - 21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편성된 홍보비의 대부분을 불용하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⁵⁾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과 같이 일반 국민에게 영향이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학금을 일시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 장학지원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장학금 지급방식을 보면, 개인별 바우처 카드(하나카드)에 매월 지원금과 동일한 포인트(400,000P)를 지급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우처 카드의 사용처는 스포츠나 학습부문에 한정되며, 포인트 사용액은 매월 정산하고 미사용 포인트는 연말에 일괄 소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에 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장학생 심사·선발 등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실제 장학금 지급을 2019년 8월부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1~7월분은 8월에 일괄 소급하여 지급하였는데, 8월에 장학생 1인당 320만원(1~8월분)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일시에 지급되었다.

그러나 애초에 사업 첫해임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실제 지급기간(8~12월)으로 편성했어야 했는데, 10개월분(3~12월)으로 편성한 후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급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한 후 실제 장학금 지급 시작시점인 8월에 1~7월분까지 소급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또한, 2019년 8월에 장학생 1인당 32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일시에 지급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월 4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장학금 지급 시작시점인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년분에 해당하는 480만원의

5) 장학생의 선발인원이 당초 목표 대비 저조한 원인으로 홍보 및 안내가 부족한 측면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카드대여나 사용목적 외 사용 등 부정사용의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장학금의 사용을 스포츠와 학습부문에 한정하기 위해 바우처카드의 사용가능 업종 및 품목을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하고 있으나, 스포츠와 학습 관련 업종 및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처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카드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8월에 1~7월분까지 일시에 소급하여 지급함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바우처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⁷⁾

[바우처 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품목 - 하나카드 가맹점 업종 카테고리표]

중분류	소분류(업종명)	참 고
서적·문구·사무용품	서적	서적, 잡지, 출판(신문·정기 간행물 등)
	교육 및 교구	몬테소리 등 학습지, 가베, 오르다 등 학습교구
	문구·사무용품	문구용구, 필기용구와 회화용구, 사무용품 포함
스포츠·레저·취미용품	종합 스포츠용품점	스포츠의류·운동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매장(나이키·아디다스·리복대리점 등)
	전문 스포츠용품점	등산·낚시·골프·헬스용품 등 특정 분야의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
	총포류	총포사(사격선수용)
	기타 레저,스포츠용품	체육사(취미용품포함) 등/어항, 수족관 제외
차량 및 관련물품	자전거	자전거관련 액세서리 포함
교육 (학교·학원)	초중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입시학원,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6) 바우처카드 사용은 매월 정산이 원칙이지만, 2019년 8월에는 1~7월분을 일괄 소급하여 지급함에 따라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7) OBS의 “[단독] 학생선수 장학금으로 낚시대?…허점 투성”(2019.10.1.)에서 낚시용품점이 스포츠용품점으로 분류됨에 따라 실내낚시카페나 바다낚시용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와 8일 동안 의류매장에서 309만원이 결제된 사례 등이 보도되었다.

중분류	소분류(업종명)	참 고
	예체능 계열 학원	음악·미술·무용·연기·예술학원·체육학원(학원설립허가증이 있는 경우)
	무술도장	학원 설립 허가증이 없는 학원과 유사한 수련시설(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기타 교육·교습·학원	컴퓨터학원, 개인교습소, 전화 및 인터넷온라인교육, 학교 및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원 등(독서실, 고시원포함)
	기타 복지문화	천문관·과학관·미술관·역사 박물관·고궁·사적지 ※ 입장료 포함(개인·법인운영시설)
취미·레저·스포츠	골프장	* 체육시설 등록증 확인[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퍼블릭(9홀이상) 실외골프장 확인시 같음, 단 파3 전용골프장 제외]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기타 취미·레저·스포츠	기원·수영장·볼링장 등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학금을 일시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 장학지원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스포츠 과학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 사업과 진천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사업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진천스포츠과학센터 운영에 필요한 스포츠 과학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 사업의 경우 2019년 계획현액 9억 4,300만원 중 9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진천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2019년 계획현액 14억 5,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스포츠 과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스포츠 과학지원	4,535	4,535	1,071	5,606	5,590	16	7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	537	537	406	943	927	16	7
진천스포츠과학센터 운영	793	793	665	1,458	1,458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 사업은 자산취득비(430-01)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진천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사업은 민간경상보조(320-01)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민간경상보조비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기관)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자산취득비로 집행하고 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과 민간경상보조비로 교부받은 예산을 합하여 연도별 스포츠과학기 자재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실상 두 사업예산을 구분 없이 집행하고 있다.²⁾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362-300

2)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두 사업예산을 모두 자산취득비(430-01)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자산취득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연말에 불요불급한 용도에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 사업’과 ‘진천스포츠 과학센터 운영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합하여 자산취득비로 집행하고 있는바, 2019년에는 두 사업의 당초 계획액인 13억 3,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 ‘스포츠과학기자재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³⁾

2019년도 당초 계획액은 13억 3,000만원이나 기자재 견적 등을 통해 13억 2,300만원의 구매계획을 수립하였고, 계약과정에서 12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

[2019년도 스포츠과학지원 기자재 구입 내역(1차)]

(단위: 백만원)

구입 사업	계약기간	계획액	계약액	낙찰차액
일체형 다중환경 구현 장치	’19.6.27~’19.10.25	530	509	21
정밀 표면거칠기 검사시스템	’19.7.25~’19.11.22	240	230	10
압력측정 보행분석 트레이드밀	’19.6.28~’19.10.26	202	190	12
신호(스펙트럼)분석기	’19.8.6~’19.12.4	111	94	17
정적밸런스 등척성 하지근력측정시스템	’19.6.28~’19.10.26	91	88	3
VR시각탐색시스템	’19.9.27~’19.12.26	60	58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시스템	’19.9.20~’19.10.18	38	36	2
웨어러블 서전트점프 측정기	’19.9.4~’19.12.3	18	17	1
청중응답시스템	’19.9.4~’20.1.2	17	16	1
NIRSIT분석패키지	’19.9.4~’19.10.4	16	16	0
합계		1,323	1,255	68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3) 전년도 이월액은 2019년 3월 이전에 모두 납품되어 지출을 완료하였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낙찰차액을 활용하기 위해 2019년 11월 스포츠과학기
자재 추가 구매계획을 수립하였고, ‘경두개직류자극기’ 등 4건에 대한 구매계약을
연말에 체결하여 3건에 대하여는 연내 지출처리하였으나, ‘레이저 커팅기’의 경우
해당 제품이 외산제품(미국)으로 연내 납품이 불가하여 예산을 이월하였다.

[2019년도 스포츠과학지원 기자재 추가 구입 내역(2차)]

(단위: 백만원)

구입 사업	계약기간	계획액	계약액	이월액	비고
경두개직류자극기	’19.12.24~’20.2.22	41	40	0	경쟁 입찰
레이저 커팅기	’19.11.26~’20.2.24	16	16	16	수의 계약
스포츠영상분석시스템 운영 PC	’19.11.26~’20.1.25	6	6	0	
다중무선통신시스템	’19.11.26~’20.1.25	4	4	0	
합계		63	62	16	

주: 경두개직류자극기, 스포츠영상분석시스템 운영 PC, 다중무선통신시스템은 2019년 12월 안에 정
상 납품되어 연내 집행완료하였음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 집행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⁴⁾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자산취득비 예산을 계획
성 있게 집행하여 낭비를 줄이고, 연말에 불요불급한 용도에 자산취득비를 집행하
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낙찰차액이 발생하자 추가 구매계획을 연말인 11
월에 마련하여 집행하였는바, 애초에 계약기간이 다음연도 1월 또는 2월까지였다는 점
에서 연도 내에 시급히 구매해야할 필요성이 적은 용도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1건의 기자재 구입예산은 연내 납품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이러한 기자재는 사실상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였어도 무방하였다고 판단된다.

4)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14.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추가 구매계획을 통해 취득한 장비들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진천스포츠과학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연말 집행 및 이월 집행에 따라 불요불급한 용도에 집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자산취득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연말에 불요불급한 용도에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부진 해소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69
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및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71
3	한국관광공사, 관광전문인력포털의 이리닝과정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75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79



문화재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18억 5,900만원이며, 530억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0.1%인 424억 8,400만원을 수납하고 105억 3,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1,859	41,859	41,859	52,653	42,298	10,351	4	80.3
국립중앙박물관특별회계	0	0	0	370	186	184	0	50.3
합계	41,859	41,859	41,859	53,022	42,484	10,534	4	80.1

자료: 문화재청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940억 700만원이며, 이 중 98.6%인 7,826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5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57,503	757,503	768,960	757,566	3,842	7,552	98.5
지역발전특별회계	24,547	24,547	25,047	25,047	0	0	100
합계	782,050	782,050	794,007	782,613	3,842	7,552	98.6

자료: 문화재청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307억 7,000만원이며, 1,454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5%인 1,433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21억 2,2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문화재보호기금	130,770	130,770	130,770	145,425	143,303	2,122	0	98.5

자료: 문화재청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351억 900만원이며, 이 중 106.1%인 1,430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3,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5,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문화재보호기금	130,770	130,770	135,109	143,303	1,633	1,358	106.1

자료: 문화재청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은 548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7억 5,000만원(6.4%)이 감소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48,719	41,859	41,859	42,484	625	△6,235
기금	9,909	8,940	8,940	12,394	3,454	2,485
합계	58,628	50,799	50,799	54,878	4,079	△3,750

자료: 문화재청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총지출은 9,03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211억 4,300만원(15.5%)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73,515	782,050	782,050	782,613	563	109,098
기금	108,456	118,705	118,705	120,501	1,796	12,045
합계	781,971	900,755	900,755	903,114	2,359	121,143

자료: 문화재청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문화재청 자산은 8,950억 7,500만원, 부채는 218억 4,300만원으로 순자산은 8,732억 3,2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91억 5,600만원, 투자자산 8억 4,900만원, 일반유형자산 8,441억 1,900만원, 무형자산 86억 8,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2억 6,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76억 7,400만원(6.9%) 증가하였다. 이는 미수채권, 기타유동자산 등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108억 5,200만원 증가, 토지취득 등으로 유형자산 464억 5,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36억 5,900만원, 장기차입부채 175억 800만원, 장기충당부채 6억 7,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16억 1,400만원(113.5%) 증가하였다.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증가로 인한 장기차입부채 93억 3,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895,075	837,401	57,674	6.9
Ⅰ. 유동자산	39,156	28,304	10,852	38.3
Ⅱ. 투자자산	849	292	557	190.8
Ⅲ. 일반유형자산	844,119	797,669	46,450	5.8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8,687	9,728	△1,041	△10.7
Ⅵ. 기타비유동자산	2,265	1,408	857	60.9
부 채	21,843	10,229	11,614	113.5
Ⅰ. 유동부채	3,659	2,006	1,653	82.4
Ⅱ. 장기차입부채	17,508	8,170	9,338	114.3
Ⅲ. 장기충당부채	676	53	623	1175.5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873,232	827,172	46,060	5.6
Ⅰ. 기본순자산	469,971	469,971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60,663	141,596	19,067	13.5
Ⅲ. 순자산 조정	242,599	215,605	26,994	12.5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7,317억 5,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7,980억 3,700만원, 관리운영비 928억 1,200만원, 비배분비용 17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44억 2,600만원, 비배분수익 373억 500만원, 비교환수익 등 991억 2,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916억 8,600만원(12.4%) 증가한 8,308억 8,000만원이며, 이는 자치단체보

조비 증가 등 따라 프로그램총원가가 전년도 대비 1,029억 6,600만원 증가한 반면 프로그램총원가 차감항목인 프로그램 수익이 지출금반납금 증가 등에 따라 110억 2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문화재보존관리 프로그램(3,935억 4,900만원)과 문화재국제교류 프로그램(708억 9,000만원), 문화재보호 프로그램(609억 6,800만원), 문화재활용 프로그램(586억 5,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62억 4,400만원과 경비 265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8억 3,100만원과 기타비용 6억 5,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773,611	681,647	91,964	13.5
가. 프로그램 총원가	798,037	695,071	102,966	14.8
나. 프로그램 수익	24,426	13,424	11,002	82.0
II. 관리운영비	92,812	90,344	2,468	2.7
III. 비배분비용	1,762	9,986	△8,224	△82.4
IV. 비배분수익	37,305	42,783	△5,478	△12.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30,880	739,194	91,686	12.4
VI. 비교환수익 등	99,126	83,580	15,546	18.6
VII. 재정운영결과(V - VI)	731,755	655,614	76,141	11.6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8,271억 7,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8,732억 3,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60억 6,000만원(5.6%)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 순자산이 전년 대비 217억 5,800만원 감소하였고,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761억 4,1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1,135억 1,500만원 증가, 조정항목은 전년 대비 304억 4,3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7,944억 7,2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36억 5,1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827,172	848,930	△21,758	△2.6
II. 재정운영결과	731,755	655,614	76,141	11.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50,821	637,306	113,515	17.8
IV. 조정항목	26,993	△3,450	30,443	882.4
V. 기말순자산(I-II+III+IV)	873,232	827,172	46,060	5.6

자료: 문화재청

마. 재정 구조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기금이 복권기금으로부터 1,013억원을 전입받고 22억원을 반환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결산기준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보급, ②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③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 등이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사업은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관 적절성에 대한 문제로 20억원이 감액(45억 1,500만원→25억 1,500만원)되었고, 매장 문화재 보존유적관리 사업은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5억원이 감액(30억원→25억원)되었으며,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 3억원이 감액(17억 1,000만원 → 14억 1,0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문화재 보수정비, ②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③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④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등이 있다.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하여 150억원이 증액(3,451억원→3,601억원)되었고,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사업은 경주양동마을 등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위하여 85억 9,200만원이 증액(276억 7,500만원→362억 6,700만원)되었다. 또한,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 사업은 국외 문화재 긴급 매입 확대 등을 위하여 50억원이 증액(10억원→60억원)되었고,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은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20억원이 증액(193억 5,100만원→213억 5,100만원)되었다.

문화재청은 ①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 ②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③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④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등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연초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으로써 과도한 보조금의 이월을 야기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실적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각 지자체 간 실집행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월액 규모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균등 배분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고도 별 실집행률이나 사업의 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신청 참여독려와 함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현황과 약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의 실행 저조 및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세계유산적 가치의 온전한 보존 및 문화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330-03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율은 70%이다. 문화재청은 2019년 예산현액 312억 3,200만원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36,267	36,267	0	+24 -22	36,269	36,258	0	11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31,232	31,232	0	0	31,232	31,232	0	0

자료: 문화재청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총 14개이나, 동 사업에서는 이 중 9개²⁾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3331-304

2) 수원화성, 남한산성, 한국의 역사마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집행실적과 연 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은 매년 교부액의 상당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2017년 68.4%, 2018년 58.1%, 2019년 47.4%로 저조한 수준이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7	21,194	21,194	21,194	21,194	10,151	31,345	21,455	8,008	1,882	68.4
2018	19,692	19,692	19,692	19,692	8,008	27,700	16,088	11,274	338	58.1
2019	31,232	31,232	31,232	31,232	11,274	42,506	20,161	21,725	620	47.4

자료: 문화재청

실집행이 저조한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의견수렴 절차 진행, 토지매입 기본계획 수립 지연,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지연 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 중 실집행률 50% 이하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

(단위: 백만원, %)

시도	문화재	교부 날짜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비 고 (실집행률 저조 사유)
경기도	남한산성	'19.3.4	6,573	2,635	3,585	40.1	이월사업 우선 집행 및 인력 감소
경상북도	양동마을, 옥산서원(경주)	'19.2.27	5,395	743	4,643	13.8	주민 간 이견 조정 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
	하회마을, 병산서원(안동)	'19.2.27	3,721	782	2,933	21.0	토지매입 기본계획 수립 지연
	산사(부석사, 봉정사)	'19.2.27	815	368	432	45.2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충청남도	산사(마곡사)	'19.2.27	360	0	360	0.0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충청북도	산사(법주사)	'19.3.6	395	41	355	10.4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전라남도	산사(대흥사, 선암사)	'19.3.4	2,850	0	2,825	0.0	세계유산센터 협의 사항 발생

자료: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연초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으로써 과도한 보조금의 이월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향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의 집행실적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사업¹⁾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²⁾의 운영비와 전통건축부채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은 2019년 예산현액 34억 4,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운영	3,447	3,447	0	0	3,447	3,447	0	0

자료: 문화재청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비 26억 2,600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목)과 전통건축부채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등 사업비 8억 2,100만원(민간위탁사업비, 320-02목)으로 나뉜다.

이 중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한 8억 2,100만원에는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예산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2019년에 장비구입비 예산 1억 2,100만원을 교부받아 5,934만원을 집행하고, 5,888만원을 자체이월하였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132-310

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전통건축 부채와 재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전통 재료·기법 전승과 함께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민간위탁사업비로 교부받은 장비구입비 예산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말 집행을 지양하고 조기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예산 1억 2,100 만원을 자산취득비(430-01) 보조비목으로 집행하였는데, 2019년도에 구매·취득한 8 건(이월건 제외) 중 4건을 연말에 집행하였다.

[2019년도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등 집행내역]

(단위: 천원)

장비명	계약액	계약기간	지출일	계약방법
캐드(S/W) 구입	2,640	'19.3.15.~7.3.	'19.6.18.	조달
어도비(S/W) 구입	3,104	'19.6.3.~7.3.	'19.6.18.	조달
알툴즈(S/W) 보안 구매	1,271	'19.6.3.~7.3.	'19.6.18.	조달
실험 및 연구장비 구매(휴대용성분분석기)	34,922	'19.8.19.~9.18.	'19.9.9.	경쟁
실험 및 연구장비 구매	11,495	'19.12.9.~12.30.	'19.12.27.	수의
카메라 보관장 구매	1,600	'19.12.18.~12.31.	'19.12.31.	수의
비디오카메라 세트 구매	2,659	'19.12.18.~12.31.	'19.12.31.	수의
노트북 구매	1,577	'19.12.18.~'20.1.17.	'19.12.31.	조달
부재정밀조사 장비	58,880	'19.8.30.~10.29.	이월 ¹⁾	조달
합 계	118,148	-	-	-

주: 1) 부재정밀조사 장비 구입을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내 납품 미이행에 따라 이월함

자료: 문화재청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 집행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³⁾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자산취득비 예산을 계획

성있게 집행하여 낭비를 줄이고, 연말에 불요불급한 용도에 자산취득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 비목(320-02)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위탁사업자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도 자산취득비 보조비목(430-01)⁴⁾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도 장비구입이라는 점에서 자산취득비에 관한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2019년 12월에 지출·구매한 장비들은 재단 사업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연말 집행에 따라 불요불급한 용도에 집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민간위탁사업비로 교부받은 장비구입비 예산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말 집행을 지양하고 조기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14.

4)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된 동 사업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가. 현 황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¹⁾의 내역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 역사유적지와 주민의 삶터가 조화를 이루는 고도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도 지정지구내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의 신·개축 및 가로경관개선을 국고보조(보조율 70%)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사업으로, 문화재청은 2019년 예산현액 21억 1,800만원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도 보존 및 육성	3,128	3,128	0	△48	3,080	2,953	0	127
고도 이미지 찾기	2,118	2,118	0	0	2,118	2,118	0	0

자료: 문화재청

동 사업은 4개 고도²⁾(경주·공주·부여·익산) 지정지구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크게 주거환경 개선과 가로경관 개선으로 나뉜다. ① 주거환경 개선은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주택 등을 신축·개축·채축·증축·수선 시 사업비를 보조(최대 1억원)해주고, ② 가로경관 개선은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보도·소공원·공공건축물 등 경관 정비, 담장·대문·간판·가로변건축물 외관 정비시 사업비를 보조(최대 3천만원)해준다.

동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고도지구 내 주민이 사업 신청을 한 후 고도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132-302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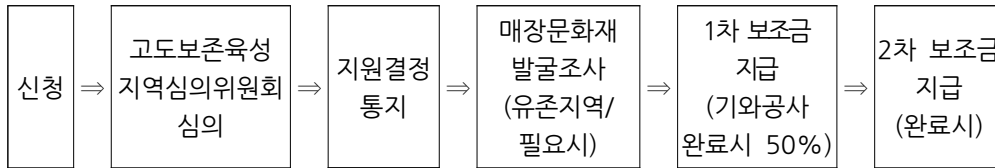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4. (생략)

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고, 필요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거친 뒤 공사와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절차]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각 고도 별 실집행률이나 사업의 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지자체 간 실집행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최근 5년 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실집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교부액이 대폭 감소한 2018년부터는 실집행률이 점차 개선되어 2019년에는 67.8%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2019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은 90억 7,600만원임에 반해 실집행액은 75억 8,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의 실집행 단계에서 예산의 재이월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5~2019년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5	8,000	0	8,000	289	7,711	0	3.6
2016	8,000	7,711	15,711	2,185	13,526	0	13.9
2017	8,015	13,526	21,541	3,671	14,973	2,897	17.0
2018	2,518	14,972	17,490	5,535	9,076	2,880	31.6
2019	2,118	9,076	11,194	7,587	3,147	460	67.8

자료: 문화재청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개 고도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공주시, 23.1%)와 가장 낮은 지자체(경주시, 9.7%)의 차이가 13.4%p였으나, 2018년에는 이 차이가 26%p, 2019년에는 37.4%p로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 간 실집행률의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7~2019년 4개 고도 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자체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7	경주시	948	3,149	4,097	399	2,668	1,030	9.7
	공주시	3,087	3,476	6,563	1,514	5,049	-	23.1
	부여군	1,400	3,464	4,864	770	2,976	1,117	15.8
	익산시	2,580	3,438	6,018	989	4,279	750	16.4
	소계	8,015	13,526	21,541	3,671	14,972	2,897	17.0
2018	경주시	500	2,668	3,168	701	1,434	1,033	22.1
	공주시	759	5,049	5,808	1,572	3,644	592	27.1
	부여군	759	2,976	3,735	961	2,156	618	25.7
	익산시	500	4,279	4,779	2,300	1,842	637	48.1
	소계	2,518	14,972	17,490	5,535	9,076	2,880	31.6
2019	경주시	529.5	1,434	1,964	1,337	626	0	68.1
	공주시	529.5	3,644	4,174	3,217	944	13	77.1
	부여군	529.5	2,156	2,686	1,139	1,165	381	42.4
	익산시	529.5	1,842	2,372	1,894	411	66	79.8
	소계	2,118	9,076	11,194	7,587	3,147	460	67.7

자료: 문화재청

이처럼 각 지자체 간 실집행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월액 규모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2019년도에 4개 지자체에 동일한 액수(5억 2,950만원)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나 원활한 지방비 편성 여부 등에 따라 사업의 진행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은 고도 지구 내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자체 별로 사업 신청건수나 지원 결정 건수, 완료율에도 차이가 나는 등 사업의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균등 배분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17~2019년 4개 고도 별 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사업 신청 건수	지원 결정		진행 건수	포기 건수	완료 건수(B)	완료율 (B/A)
			건수(A)	금액				
2017년	경주	34	11	433	-	2	9	81.8
	공주	23	23	746	-	1	22	95.6
	부여	37	37	1,309	11	9	17	45.9
	익산	45	32	1,243	-	3	29	90.6
2018년	경주	41	30	1,138	3	5	22	73.3
	공주	60	60	2,067	4	4	52	86.6
	부여	24	24	756	11	-	13	54.2
	익산	27	23	725	2	1	20	87.0
2019년	경주	51	45	841	16	5	24	53.3
	공주	53	53	2,027	5	2	45	84.9
	부여	15	13	399	6	-	7	53.8
	익산	26	21	498	8	-	13	61.9

자료: 문화재청

따라서 문화재청은 각 고도 별 실집행률이나 사업의 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지자체 간 실집행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¹⁾의 내내역사업인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은 기존 문화재 안내판의 안내 문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문화재 정보와 관람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사업으로, 문화재청은 2019년 예산현액 55억 6,800만원을 전액 교부하여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유산 활용 진흥	33,863	33,863	0	±275	33,863	33,820	0	43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6,099	6,099	0	0	6,099	6,099	0	0
문화재 안내판 정비	5,568	5,568	0	0	5,568	5,568	0	0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기존의 문화재 안내판들에 문화재 전문용어들이 많이 쓰여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해 2018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문화재 안내판 정비 필요대상에 대하여 예산 신청을 받은 후 2019년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전국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 1,740건의 문화재 안내판을 사업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고보조율은 국가지정 문화재는 70%이고 시도지정 문화재는 30%이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i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3431-301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신청 참여독려와 함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현황 파악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실집행률이 47.3%에 머물렀는데, 동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도 별로 실집행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교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의 경우 실집행률이 높았으나,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교부액이 많은 지자체(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의 경우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2019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합계	5,568	0	5,568	2,635	2,458	475	47.3
서울	178	0	178	167	0	11	94
부산	88	0	88	79	3	6	90
대구	28	0	28	24	0	4	86
인천	115	0	115	78	10	27	68
광주	18	0	18	14	0	4	78
대전	10	0	10	10	0	0	100
울산	18	0	18	12	0	6	67
세종	14	0	14	7	7	0	50
경기	325	0	325	157	153	15	48
강원	364	0	364	214	64	86	59
충북	184	0	184	99	78	7	54
충남	422	0	422	189	233	0	45
전북	385	0	385	237	117	31	62
전남	1,159	0	1,159	239	908	12	21
경북	979	0	979	405	404	170	41
경남	1,075	0	1,075	503	481	91	47
제주	206	0	206	201	0	5	98

자료: 문화재청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들의 경우 국가지정(국고보조율 70%), 시도지정(국고보조율 30%) 문화재에 대한 지방비 매칭지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액이 많고 실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완료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대상건수는 총 1,740건이었으나, 978건을 완료하고 762건을 이월하여 완료율이 56.2%에 그치고 있다. 실집행률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별로 사업실적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완료율이 100%인 지자체들이 있는 반면에 50%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대상 및 완료건수 현황]

(단위: 건, %)

시도별	대상건수(A)	완료건수(B)	이월건수	완료율(B/A)
총계	1,740	978	762	56.2
서울	28	28	0	100.0
부산	29	21	8	72.4
대구	1	1	0	100.0
인천	37	30	7	81.1
광주	12	12	0	100.0
대전	8	8	0	100.0
울산	1	1	0	100.0
세종	15	0	15	0.0
경기	114	109	5	95.6
강원	78	70	8	89.7
충북	57	15	42	26.3
충남	146	55	91	37.7
전북	173	135	38	78.0
전남	161	53	108	32.9
경북	373	188	185	50.4
경남	451	196	255	43.5
제주	56	56	0	100.0

자료: 문화재청

동 사업은 2022년까지 국비를 총 132억원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도한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특히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계속 교부되면 이월액이 누적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정비 대상 안내판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관심도에 따라 실제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의 수보다 적게 신청하여 일부 안내판은 정비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²⁾ 특히, 시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지정 및 관리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국고보조율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내판 정비사업 국고보조 신청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 규모: 1,740건 ○ 국비: 56억원	○ 규모: 764건 ○ 국비: 28억원	○ 규모: 600건 ○ 국비: 24억원	○ 규모: 600건 ○ 국비: 24억원	○ 규모: 3,704건 ○ 국비: 132억원

자료: 문화재청

따라서 문화재청은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집행을 독려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 안내판이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신청 참여독려와 함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현황 파악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2019년 시도별 대상건수를 보면, 대구와 울산은 각각 1건에 불과하여 정비 사업의 신청을 소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문화재보호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을 징수하는 수입으로, 2019년도 수입 계획현액은 30억 원이며, 89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8억 2,500만원이 수납되었고, 21억 1,1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2019회계연도 문화재보호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	3,000	0	3,000	8,936	6,825	2,111	0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2019년도 문화재보호기금의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의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 4년 간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의 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정산반환금으로, 2016년 미수납액은 19억 7,500만원이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64.5%가 증가한 21억 1,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인 수납률도 2016년(82.7%)부터 2019년(76.4%)까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12-59-596

[2016~2019년 문화재보호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16	4,000	4,000	0	4,000	11,528	9,553	238.8	82.7	1,975	0
'17	4,000	4,000	0	4,000	10,322	8,355	208.9	80.9	1,968	0
'18	3,000	3,000	0	3,000	5,522	4,239	141.3	76.7	1,283	0
'19	3,000	3,000	0	3,000	8,936	6,825	227.5	76.4	2,111	0

자료: 문화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2)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후 보조금액을 확정할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우선 세입 조치하고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이 지연될 경우 정산반환금이 미수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납부 지자체에 수시 문서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2018년에는 지자체에 대한 납부요청 공문 발송이 4회 이루어졌던 반면에 2019년에는 2회 및 전화협의 2회에 그쳐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징수 노력이 예년에 비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³⁾

한편,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할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청은 2018년에는 4차례(1월 26일, 1월 29일, 9월 18일, 10월 15일)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9년에는 2차례(2월 12일, 11월 25일) 발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문화재보호기금의 국고보조금 정산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이전에 발생한 미수납채권도 약 4억 9,126만원이 남아 있으며, 특히 2014년과 2016년에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아직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이전 발생한 문화재보호기금의 국고보조금 정산 미수납액 현황]

(단위: 원)

납부자	결의 내용	금 액
전라남도청	2014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02,260
전라남도청	2016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집행잔액 분납	141,571,840
전라남도청	2016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집행잔액 분납	31,843,550
전라남도청	2017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집행잔액 분납	135,456,480
전라남도청	2017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집행잔액 분납	8,697,570
평창군청	2017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집행잔액	1,447,940
부산광역시	2017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정산 집행잔액	12,042,570
강원도지사	2017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정산 집행잔액	88,697,330
경상남도	2017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정산 집행잔액	64,319,690
부산광역시	2017년 문화재돌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877,470
전라남도 순천시	2017년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13,900,000
합 계	-	491,256,700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문화재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납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문 발송 및 방문협의를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15.

가. 현 황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¹⁾ 사업은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의 진단·보존·복원·연구 등 전승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은 2019년 예산현액 5억원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자본보조(320-07목) 사업이고, 국고보조율은 70%이다.

[2019회계연도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500	500	0	500	500	0	0

자료: 문화재청

동 사업은 당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하여 경기도 하남시에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사업 개요]

- 사업명 :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 사업기간 : 2017년~2022년(당초계획 대비 3년 연장)
- 사업예산 : 총 190억원(국고 133억, 자부담 57억)
- 사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산 85번지(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번지)
- 규모/구조 : 연면적 7,352.02㎡, 철근콘크리트 구조(지상 2층, 지하 2층)
- 추진방식 : 민간자본보조(보조사업자 :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보조율 70%)

자료: 문화재청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1136-308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의 사업대상 부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변경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관련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부지 선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17~2019년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7	5,480	5,480	5,480	5,480	0	5,480	620	4,860	0	11.3
2018	3,296	3,296	0	0	4,860	4,860	0	0	4,860	0.0
2019	500	500	500	500	0	500	0	500	0	0.0

자료: 문화재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종교용지 허용용도 해석의 차이로 허가가 보류되었고, 2018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대체부지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지 재조정을 통해 결국 2018년 11월 기존 부지로 사업부지를 확정하였다. 2019년의 경우 6월에 하남시 건축심의회가 완료되어 문화재청은 10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12월 5일 보조사업자인 조계종 유지재단이 다시 사업대상 부지 변경 신청을 하였고, 12월 10일 문화재청이 사업계획변경 신청관련 보완요청을 하면서 2019년도 보조금 전액이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사업 추진 경과]

- '16.3.~12. :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17.11. : 건축허가 신청 및 보류(조계종→하남시청)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종교용지* 허용용도 해석 차이

* 종교시설 50% 이상 건립 필요('18.4월 / 국토부)
○ '18.4.~10. : 대체부지(21개소) 및 기존 부지 대상 적정성 검토
○ '18.11. : 기존 부지로 사업부지 확정(조계종 총무원)
○ '19.6. : 하남시 건축심의 완료(원안 통과)
○ '19.12.5. : 사업대상 부지 변경* 신청(조계종→문화재청)
- (당초) 하남 위례시 → (변경) 화성시 용주사 템플스테이** 부지
* 종교시설건립을 위한 재원조달 곤란 및 종교시설과 동연구시설의 운영문제
**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로 문체부의 사전 처분 승인 필요
○ '19.12.10. : 사업계획변경 신청관련 보완요청(문화재청→조계종)
- 용주사 템플스테이의 문체부 처분승인 및 동 부지에 대한 토지승낙서
○ '20.4.27. : 용주사 템플스테이에 대한 처분 곤란(문체부→조계종)
○ '20.6. 현재 : 사업대상 부지 변경 재검토 중(조계종)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²⁾하여 2020년도 예산에 48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0년 6월 현재 보조사업자인 조계종 유지재단은 사업대상 부지 변경을 재검토 중으로 2020년 예산의 연내 집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 사업은 사업부지 선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국고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또는 불용이 반복되고 있고, 사업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3년이 연장되었으나 현재 사업대상 부지 변경이 재검토되고 있어 사업기간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등 사업추진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9년의 경우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교부 후 보조사업자인 조계종이 다시 사업부지 변경을 신청하여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문화재청과 보조사업자 간의 협의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업대상 부지가 조속히 확정되어 변경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조계종 유지재단), 관련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2020~2022년 사업비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4,872	500	6,808

자료: 문화재청

집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욱 사업평가심의관
신 은 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 태 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 석 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 동 훈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권 순 진 예산분석관

지원 | 이 지 은 행정실무원
최 해 인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0년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95-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